

	<b>소단위전공운영규정</b>	규정번호	3-4-34
		제정일자	2026.03.01
		개정일자	-
		개정차수	-
		소관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 학칙 제37조의4 및 제49조의3에 따라 소단위전공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소단위전공은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맞춤형 학습경로 제공, 융합 및 직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, 기존 학과·전공 체계를 보완하여 일정 학점 규모로 구성된 소규모·모듈형 교육과정을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수 사실을 인증하는 과정을 말한다.

② 소단위전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마이크로디그리(Micro Degree): 특정 전문 분야 또는 직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구성된 소규모 학위과정
2. 융합트랙 마이크로디그리(Convergence Track Micro Degree): 둘 이상의 학문 또는 전공을 융합하여 구성한 마이크로디그리
3. 나노디그리(Nano Degree): 단기 집중형 직무·기술 역량 중심의 초소형 교육과정
4. 기타 소단위전공: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형태의 소규모 교육과정

제3조(교육과정편성) ① 소단위전공의 교과목은 별도의 교육과정표에 표기하며, 해당 학과 편성학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② 소단위전공은 다음 각 호의 학점으로 개설할 수 있다.

1. 마이크로디그리: 6학점 이상
2. 융합트랙 마이크로디그리: 6학점 이상
3. 나노디그리: 4학점 이상

③ 소단위전공 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조(신청) ① 소단위전공의 신청횟수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각 소단위전공별 1회로 제한한다.

② 소단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이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소단위전공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매학기 개강 전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(신청의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단위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.

1.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자
2. 계약학과에 입학한 자
3. 그 밖에 총장이 소단위전공 운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6조(학점이수 및 포기) ① 소단위전공 신청 이전에 이수한 소단위전공 교과목은 소단위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② 소단위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며,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수강취소가 되지 않는다.

제7조(운영) ① 소단위전공은 정규학기 또는 AU+(플러스)학기에 운영할 수 있다.

② 소단위전공 이수 허용 인원은 교수인력, 강의실(실험실습실을 포함), 신청현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.

제8조(수강) ① 소단위전공 교과목 수강은 제9조에 따른 이수학점 이내로 제한한다. 다만, 미

이수로 인한 재수강 신청은 허용한다.

② 졸업 학기에는 소단위전공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. 다만, 소단위전공 이수요건 충족을 위해 1개 교과목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, 졸업 학기에도 해당 교과목의 수강을 허용할 수 있다.

③ 원격수업으로 운영되는 소단위전공 교과목은 학기별 1개 교과목 이내로 수강할 수 있다.

④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재학생에게는 소단위전공 교과목의 수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과정 이수) 소단위전공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학점을 이수할 경우에는 해당 소단위전공의 이수 사실을 학위증에 표기한다.

1. 마이크로디그리: 6학점 이수
2. 융합트랙 마이크로디그리: 6학점 이수
3. 나노디그리: 4학점 이수

제10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①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마이크로디그리운영지침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'마이크로디그리 운영 지침'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마이크로디그리는 이 규정에 따른 소단위전공으로 본다.

③ (이수 중인 학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은 종전의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.

④ (기 취득 이수증 및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)

1. 종전의 지침에 따라 취득한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증은 이 규정에 따른 소단위전공 이수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.

2. 종전의 지침에 따라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은 이 규정에 따른 소단위전공 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.